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의료취약지의 국립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특례 등〉

■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808호)

2026. 4.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의료취약지의 국립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특례 등	2
[참고자료]	1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선민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6. 2. 12.

3. 회부연월일 : 2026. 2.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강원도 등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국립대학병원은 인구 부족 및 환자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중증 환자 비율 감소 등으로 평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탈락하고 있음. 이로 인해 우수 의료진의 기피 및 이탈이 초래되고 지역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기능이 붕괴되고 있음.

이에 의료취약지의 국립대학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해당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기관에 의료 인력 파견 및 순환 진료를 하도록 하며, 국가가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립대학병원의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19조제4항 등).

Ⅲ. 검토의견

1. 의료취약지의 국립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특례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의 국립대학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국립대학병원 소속 의료 요원을 해당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기관에 파견하여 순환진료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8조의2 신설, 제19조제4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상급종합병원 지정에 관한 특례 등) 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이하 “의료취약지”라 한다)의 대학병원에 대하여 「의료법」 제3조의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필수 의료 보장 및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대학병원

제19조(출연 또는 보조) ① ~ ③ (생략) <u><신설></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생략)	의 소속 의료 요원을 해당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파견하여 순환진료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의료 요원은 상급종합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료 요원의 파견 및 겸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출연 또는 보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의료 요원의 파견 및 순환진료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한다. ⑤ -----제4항까지의----- ----- -----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나. 검토의견

□ 현행 「의료법」 제3조의4¹⁾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해당 요건으로 ① 20개 이상의 진료과목 및 해당 전문의를 둘 것, ② 전문의 수련기관일 것, ③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는 것, ④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는바,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고 이러한 기준을 갖추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현재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은 47개로, 국립대학교병원 10개²⁾ 중 강원대학병원과 제주대학병원을 제외한 8개 병원이 상급

1)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는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국립대학교병원은 서울대·충북대·충남대·강원대·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북대·전남대·제주대 총 10개임.

종합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음.

[권역별 상급종합병원 지정 현황]

진료권역	지정기관명	* 가나다순
서울권 (14개)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u>서울대학교병원</u> ,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경기 서북부권(4개)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경기 남부권(5개)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u>분당서울대학교병원</u> ,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강원권(2개)	강릉아산병원,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북권(1개)	<u>충북대학교병원</u>	
충남권(3개)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u>충남대학교병원</u> , 학교법인건양교육재단건양대학교병원	
전북권(2개)	원광대학교병원, <u>전북대학교병원</u>	
전남권(3개)	<u>전남대학교병원</u> , 조선대학교병원, <u>화순전남대학교병원</u>	
경북권(5개)	<u>경북대학교병원</u> ,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경남동부권 (6개)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동아대학교병원, <u>부산대학교병원</u> , <u>양산부산대학교병원</u> ,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울산대학교병원	
경남서부권 (2개)	<u>경상국립대학교병원</u> , 학교법인성균관대학삼성창원병원	
전 국	총 47개	

(자료 : 보건복지부)

- 한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³⁾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취약지에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의료 인력 공급 지원 및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의 보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의료취약지 지정 현황⁴⁾]

지역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역내국립대병원(소재지)
대구	군위군	경북대병원(대구시 중구) 철곡경북대병원(대구시 북구)
인천	강화군, 옹진군	-
경기	가평군,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분당서울대병원(성남시)
강원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강원대병원(춘천시)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 충주시	충북대병원(청주시)
충남	공주시,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

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의료취약지의 지정·고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주기적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분석하여야 한다.

1. 인구 수, 성별·연령별 인구 분포, 소득 등에 따른 지역 내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2. 의료인력·의료기관의 수 등 지역 내 의료공급에 관한 사항
3.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의료기관 접근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 공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분석 결과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료취약지를 지정할 때에는 부족한 의료서비스의 대상 및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의료취약지(이하 “의료취약지”라 한다)에 대하여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의료 인력의 공급에 대한 지원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의 보조 등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취약지 지정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시행 2024. 12. 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61호]

지역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역내국립대병원(소재지)
전북	고창군,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북대병원(전주시)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전남대병원(화순군)
경북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영덕군, 영주시, 영양군,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경남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경상국립대병원(진주시)
제주	서귀포시	제주대병원(제주시)

□ 그런데 강원도 등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국립대학병원은 인구 부족 및 환자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중증 환자 비율 감소 등으로 평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탈락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해 우수 의료진의 기피 및 이탈이 초래되고 지역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기능이 붕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의 국립대학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국립대학병원 소속 의료 요원을 해당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파견하여 순환진료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의 국립대병원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의 예외를 적용하도록 하고 해당 국립대병원 의료인력의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파견·순환진료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의료취약지 국립대학병원의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 공백 해소 및 지역 간 의료격차를 완화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일정한 진료실적, 시설·장비, 전문 인력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정되고 있는바, 의료취약지의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정 기준 예외 적용이 현행 지정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아울러, 국립대병원 의료인력의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파견·순환진료 업무 수행은 국립대학병원의 의료인력을 활용하여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파견·순환진료 업무 수행의 일률적 적용 시 국립대학병원 본원의 진료 역량 약화, 인력 운영 불균형 등의 영향도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의료여건 및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한 운영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그 외 개정안은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대학병원’을 상급 종합병원 지정 기준 예외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에는 국립대학병원이 부재하여 개정안의 지정 기준 예외 적용 대상이 없는 문제점이 있는바 개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포함된 권역 내의 대학병원’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현재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강원대학병원은 춘천시에 소재하고, 제주대학병원은 제주시에 소재하고 있는데 각각의 소재지는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아님.

□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교육부, 강원대학병원, 국립대학병원 협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관계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교육부: 신중 검토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에는 국립대병원이 없으므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의제 대상 또한 존재하지 않음
- 개정안의 취지가 ‘모든 국립대병원을 상급으로 지정·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라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한 고난이도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그 역량과 시설 등을 엄격히 평가하고 있는바, 국립대병원이 평가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 없이 예외를 인정할 경우 제도 운영의 취지를 벗어날 우려 존재하여 신중검토 필요

○ 강원대학교병원 : 일부 수정

- 의료취약지 국립대병원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안정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법안의 기본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
- 다만, 현재 의료취약지 내 국립대병원이 부재한 점, 의료요원 운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법안 보완 필요

○ 국립대학병원협회 : 일부 수정

-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의료요원 파견 및 순환진료 지원 내용 상세화 등 법안 보완 필요

문 의 처

02)6788-5185

참고 1

상급종합병원 개요

- **(개요)**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
- **(지정 주체)** 복지부장관(3년마다 지정)
- **(근거)** 「의료법」 제3조의4
- **(지정 병원)** 47개 병원 (제5기('24~'26년) 기준)
- **(지원 규모)** 3년간 10조원(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 **(지정 기준)** 20개 이상 전문과목 보유(필수 9개 포함), 전문진료질병군 환자비율 34% 이상,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인당 1인 이상 인력 보유,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기관 검사결과 '적합' 등

<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

구분	제5기('24~'26년) 기준
환자구성 상태	전문진료질병군 환자비율 34% 이상
	단순진료질병군 환자비율 12% 이하
	의원중점 외래질병 환자비율 7% 이하
진료기능	필수진료과목(9개)을 포함한 20개 이상 전문과목을 갖추고 진료과목마다 전속전문의 1인 이상 배치
	중앙,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교육기능	레지던트 수련병원
인력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인당 1인 이상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인당 1인 이상
시설	성인소아 및 신생아중환자실 설치, 시설규격 준수 및 전담전문의 각각 1명 이상 배치
	병문안객 통제시설 및 보안인력
	정보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기준 충족여부
장비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기관 검사결과 '적합'
의료서비스 수준	의료법 제58조의3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